

## 아세안(인도네시아)산 의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최근 아세안 국가에 여러 FTA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협정별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의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요

- 한-아세안 FTA적용국가는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한국 총 11개국입니다. 한-아세안 FTA에서 의류는 세번변경기준 선택시 재단, 봉제 등 가공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나(CTC+SP),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든 협정에서 가공공정기준(SP)이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II. 주요 내용

-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는 협정에 따라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협정과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필요

협 정	의류 및 의류 부속품(61류 및 62류)의 PSR	비고
한-아세안 FT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재단·봉제)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한-싱가포르 FTA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재단·봉제)	
한-베트남 FT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가공공정 삭제 22.08.01 개정
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한-캄보디아 FT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22.12.01 발효 예정
한-인도네시아 CEPA	2단위 세번변경기준	발효 예정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청] 아세안(인도네시아)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 |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정승은 관세사

T 070-4353-5150  
E sejeo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